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 유급 휴가/병가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번역 출처 : Job Korea USA / 정보 출처: The Department of Labor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직원이 일을 못할 경우 최대 2주(80시간)까지 일반급여의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자가격리에 들어간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2주(80시간)까지 직원 급여의 2/3의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다.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이 코로나로 인해 학교가 닫았거나 child care provider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 10주간 급여 2/3로 paid expanded family and medical leave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고용주: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FFCRA or Act)의 유급 병가 및 expanded family and medical leave는 500명 이하 직원 규모의 공공기업과 개인 고용주에 해당되며, 50명 이하 직원 규모의 소기업은 학교가 문을 닫거나 child care provider가 불가능한 아이를 돌보기 위한 휴가 제공 요건에 면제 가능.

해당 근로자: 해당되는 고용주 아래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코로나와 관련된 사유로 2주간의 유급 병가가 허락 됨.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코로나로 인해 아이를 돌봐야 하는 사유라면 추가 10주간의 paid family leave를 받을 수 있음.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notice of leave를 미리 제공해야 함.

유급 병가로 인정되는 사유 : FFCRA로 인해 근로자는 아래 사항일 경우 유급 병가에 허락됨.

1.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명령이 따라야 할 경우
2. 의료인으로 부터 자가격리한 것을 권고 받았을 경우
3.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을 보여 의료 진단을 받고 있을 경우
4. 1번 또는 2번과 같은 사유로 누군가를 돌봐야 할 경우
5. 코로나로 인해 학교 또는 어린이집이 닫아 아이를 돌봐야 할 경우

Leave 기간:

1~4번: 풀타임 직원은 총 80시간의 leave가 가능, 파트타임 직원은 2주 동안 평균 시간만큼 가능.
5번: 풀타임 직원은 주 40시간 기준 12주 동안 leave가 가능(2주 유급휴가+10주 유급 expanded family & medical leave), 파트타임 직원은 그 기간 동안 평균 근무하는 시간만큼 가능.

Leave 급여 계산:

1~3번: 일반 급여 또는 최저임금 (높은 금액에 따라) 하루 \$511까지, 총액(2주간) \$5,110까지 지급.
4번: 일반 급여의 2/3 또는 최저임금의 2/3 하루 \$200까지, 총액(2주간) \$2,000까지 지급.
5번: 일반 급여의 2/3 또는 최저임금의 2/3 하루 \$200, 총액 (12주간) \$12,000까지 지급.

IRS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시에 의하면 만약 코로나바이러스 sick pay로 \$5,000를 직원에게 지급하고, 회사의 총 IRS payroll tax deposit 금액이 \$8,000일 경우 \$5,000 지급액을 credit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3,000 만 payroll tax deposit 납부를 하면 된다.